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활동반자 관계의 법적 근거 마련 〉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634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5
2. 총괄검토	21
3. 조문별 검토	27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용혜인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5. 9. 3.
3. 회부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 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 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6항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생활동반자제도의 제안배경, 특징, 법적 보호 내용

제정안은 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동반자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도 가족 관계와 유사하게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임.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며 부양을 할 수 있음. 이 같은 다양한 관계들 중에서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에서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

제정안은 혼인 관계를 선택하기 주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²⁾을 고려하여 이들이 혼인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동반자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정 영역에서는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유사한 보호를 받는 생활동반자관계를 신설하는 것임.

1) 이는 혼인을 통한 부부 관계 형성 및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이 우리사회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농업, 제조업, 보건, 의료 등 분야의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력 향상, 호환마마(虎患媽媽, 호랑이의 습격과 천연두) 등 자연환경의 위협 감소, 인구 증가, 건강 수명 연장, 정보 접근성 향상, 경제 환경, 양성 평등 문화, 사회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을 성격도 함께 가지는 백년가약인 혼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와 「민법」에 따른 혼인과 비교해보면, 서로를 돌봐주고 부양하는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① 혼인은 배우자의 가족과 인척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생활동반자관계는 생활동반자 상대방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³⁾이고, ② 혼인은 관계의 해소를 위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 사유⁴⁾가 있어야 하지만 생활동반자 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해소가 가능하다(안 제24조제2호)는 특징이 있음. 즉, 생활동반자관계는 형성되는 관계의 범위를 제한하고, 관계의 해소 절차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임.

< 생활동반자관계와 혼인의 특징 비교 >

구분	배우자의 가족과 관계	해소사유
혼인	인척관계 형성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또는 법률로 정한 이혼사유
생활동반자제도	인척관계 형성되지 않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해소 가능

3) 인터넷신문 THE FACT 2023년 4월 27일 기사, “[인터뷰]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한 이유는요…” <https://news.tf.co.kr/read/ptoday/2014417.htm>

4)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한편, 제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대해 일정한 영역에서는 혼인한 부부와 유사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관계를 해소할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했을 때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⁵⁾.

< 제정안 본칙,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한 법적 지위·권리 부여 >

시기	생활동반자관계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권리
①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때	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 등록 관계를 증명 가능
②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주거권, 피부양자 인정(소득세 인적공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돌봄휴직, 출산휴가, 가족요양보호 제도, 인신구제, 친양자 입양 허용
③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때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 손해배상 위자료,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④ 생활동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를 권리, 주택임대차의 승계, 국민연금의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

먼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제정안은 생활동반자관계를 신고하고, 등록하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음으로,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에는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주거권, 피부양자 인정(소득세 인적공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돌봄휴직, 출산휴가, 가족요양보호 제도, 인신구제, 친양자 입양 허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5) 황두영, 「외롭지 않을 권리」, pp.215~279 참조, (주)참언론 시사IN북, 2020

그리고 제정안은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 손해배상 위자료,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동반자가 사망했을 때와 관련해서는 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장례를 치를 권리, 주택임대차의 승계, 국민연금의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생활동반자관계의 각 시기 별로 제공하는 법적 보호와 관련된 제정안의 세부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음. 한편, 위의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부칙 제2호(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해 개정되는 다른 법률의 내용은 아래 (2) 제정법의 체계 항목에 기재되어 있음.

< 생활동반자관계의 시기별 법적 보호 내용과 관련된 제정안 규정 >

①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에 관련된 제정안 규정
안 제9조(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생활동반자관계는 제10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안 제31조(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생활동반자관계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 제34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로 발급한다. 1. 당사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상대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현재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은 당사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관련 제정안 규정

1. 주거권 관련 조항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㉔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호의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 (참고)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2. 소득공제 : 피부양자 인정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로서”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로서”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 생활동반자 또는”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참고)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장가입자와 생활동반자

※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4. 돌봄휴직, 출산휴가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중략) …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의”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생활동반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부모, 자녀”를 “부모, 생활동반자, 자녀”로 한다.

※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족요양보호제도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⑪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 등”을 “가족 등(생활동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인신 구제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㉓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배우자”를 “배우자, 생활동반자”로 한다.

※ (참고) 「인신보호법」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7. 친양자 입양 허용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㉔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부”를 “부부거나 3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는”을 “하거나 1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 있는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참고)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때 관련 제정안 규정

1. 재산의 분할

안 제28조(재산분할청구권) ①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위자료

안 제30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3.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생활동반자 혹은 생활동반자였던 사람 ... (이하 생략)

※ (참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 라. (생략)

④ 생활동반자가 사망했을 때 관련 제정안 규정

1. 장례를 치를 권리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에 “생활동반자”를 추가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간 생략)...

다. 자녀 라. 부모 ... (이하 생략)

※ (참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 (이하 생략)

2. 주택임대차의 승계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한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국민연금의 유족 급여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와 같이 본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6장, 본칙 39개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총칙(제1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제2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제3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제4장),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제5장), 벌칙(제6장)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효력, 등록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4편 친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응되는 성격의 조항이 있음.

< 제정안과 관련된 법률 조항 >

제정안	유사 입법례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생활동반자관계 관련 사무의 관장)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관장)
제6조(권한의 위임)	가족관계등록법 제3조(권한의 위임)
제2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제7조(생활동반자관계의 형성의 능력)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제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9조(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0조(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신고방법)
제11조(신고서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12조(외국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신고)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13조(생활동반자관계 신고의 수리)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14조(생활동반자관계의 무효)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15조(준용규정)	
제3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제16조(생활동반자 간의 의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7조(생활동반자 간의 가사대리권)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18조(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19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20조(특유재산의 관리)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21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22조(생활비용)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제23조(입양)	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등),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4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제24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사유)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25조(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26조(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의 신고)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27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와 자의 양육책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28조(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9조(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손해행위취소권)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손해행위취소권)
	제30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5장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31조(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32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3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가족관계등록법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4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35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36조(인터넷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37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가족관계등록법 제117조(벌칙)
제39조(벌칙)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벌칙)

한편, 제정안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26항까지의 규정을 통해 26개의 다른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그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지원·보호 대상에 규정된 부부, 배우자, 친족 등의 부분에 생활동반자를 추가함으로써,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칙 제2조를 통해 개정되는 법률 26개 조항은 아래 표와 같음

<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해 개정되는 법률 조항 >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해 개정되는 법률 조항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보조인) ②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

	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8항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9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0항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제1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항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13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제1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5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항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제17항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18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9항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17조의2(처방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제20항	인신보호법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제21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2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제2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③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

	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5항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제2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취지

제정안은 혼인 관계 이외에 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동반자 관계인 생활동반자를 신설함으로써, 혼인을 선택하기 주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며 지내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에 따르면, 청년 동거 외에도 가족관계를 더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는 중노년 동거의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돌봄의 수요가 많은 노년 계층이 함께 지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⁶⁾.

그리고, 제정안은 부칙 제2조를 통해 26개의 다른 법률을 개정하여 건강보험, 세금, 장례, 돌봄휴가, 가족요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대리수령, 산업재해 보상, 노인복지주택 입소, 주택임대차계약의 승계 등의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법률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⁷⁾ 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실효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부부가구, 비친족가구 등은 증가한 반면, 부부+미혼자녀

6) 황두영, 「외롭지 않을 권리」 pp.121~132 참조, (주)참언론 시사IN북, 2020

7) 참고로, 제정안의 본칙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등록·증명 등 생활동반자 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등의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증가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음⁸⁾.

< 주요 가구유형별 가구, 2022-2052 >

(단위: 만 가구, %)

		가구						구성비				
		2022	2027	2032	2042	2052	연평균 변화	2022	2027	2032	2042	2052
계		2,166.4	2,280.7	2,365.2	2,436.6	2,327.7	5.4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738.9	855.3	926.6	994.0	962.0	7.4	34.1	37.5	39.2	40.8	41.3
친 족 가 구	계	1,377.5	1,358.5	1,361.0	1,356.6	1,284.6	-3.1	63.6	59.6	57.5	55.7	55.2
	부부	374.3	419.1	466.4	529.6	531.8	5.3	17.3	18.4	19.7	21.7	22.8
	부부+자녀	590.5	549.7	520.1	464.6	404.8	-6.2	27.3	24.1	22.0	19.1	17.4
	부+자녀	50.0	48.0	45.9	42.7	39.8	-0.3	2.3	2.1	1.9	1.8	1.7
	모+자녀	150.6	148.2	146.2	143.5	137.6	-0.4	7.0	6.5	6.2	5.9	5.9
	3세대이상	68.0	51.7	41.6	31.9	26.4	-1.4	3.1	2.3	1.8	1.3	1.1
	기타*	144.2	141.9	140.9	144.3	144.2	0.0	6.7	6.2	6.0	5.9	6.2
비친족가구		50.0	66.8	77.5	86.0	81.1	1.0	2.3	2.9	3.3	3.5	3.5

*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2024.

또한, 여성가족부가 2021년에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⁹⁾”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69.8%(전적으로 수용 가능 30.8%, 약간 수용 가능: 39%)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가구 형태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가구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제정안은 혼인 외의 방식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통계청 2024년 9월 12일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9) 한국조사협회 EMBRAIN PUBLIC,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7

(2) 총괄 검토 필요 사항

제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역에서는 혼인한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로서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 제도를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동거·돌봄 공동체가 법적 보호와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 혼인을 통해 성립한 가족에게 부여하는 법률적 지위와 권리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혼인과 가족 관계에 대해 부여하는 특별한 권리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과 친족관계를 중요시하는 의견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생활동반자에 대해 혼인을 기반으로 성립한 가족과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또한, 생활동반자관계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안정된 환경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27조는 생활동반자관계 해소되는 경우의

10) 참고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출처: 인터넷신문 크리스천투데이 2023년 5월 12일 기사,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생활동반자법 성공 아닌 실패 사례”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4411>

양육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동반자제도는 혼인과 달리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기초로 하고, 일방이 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실제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을 강화와 함께 생활동반자관계 성립부터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해외 입법례

① 프랑스: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률¹¹⁾

프랑스는 1999년 11월 15일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loi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민법전에 “제12장 연대시민계약(pacte civile solidarité)과 사실혼”을 추가했고, 연대시민계약으로 결합한 당사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과세일반법전, 사회보장법전, 노동법전을 추가함.

프랑스 민법 제12장제1절 연대시민계약(제515조의1~515조의7)은 연대시민계약의 정의, 무효 사유, 신고서 작성, 연대시민계약의 종료,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연대시민계약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1는 연대시민계약을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프랑스 민법 제12장제2절 사실혼(제515조의8)은 사실혼을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생활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공동생활로 특징지어지는 사실적 결합이라고 정의함.

프랑스 과세일반법전 제885조의A는 민법전 제515조의1에서 정의한 연대시민계약으로 결합한 당사자들은 공동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정함.

11)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 DB,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1999. 11. 15.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L.161조의14제1항은 연대시민계약으로 사회적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이 다른 명목으로 피 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고 규정함.

프랑스 노동법전 제L.223조의7, 제L.226조의1제4항 및 제L.784조의1 규정은 연대시민계약으로 결합한 당사자들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② 독일 : 생활동반자관계법(2001년 제정, 2017년 폐지)¹²⁾

독일은 2001년 8월 1일 혼인과 별도로 고유한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을 제정함.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은 민법의 혼인상 관계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적용을 받게 되며, 일반적, 재산·상속, 생활동반자의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 입양 등을 규정함.

독일은 이후 민법을 개정하며 동성혼을 허용하고, 기존의 생활동반자법을 폐지함.

③ 일본: 파트너십 증명제도¹³⁾

2015년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시부야구 파트너십 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12) 전윤정, “생활동반자제도 해외 사례 및 입법정책 방안”,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2023년 5월 15일)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13) 전윤정, “생활동반자제도 해외 사례 및 입법정책 방안”,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2023년 5월 15일)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3.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제정안 제1조는 이 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생활동반자관계, 생활동반자 등을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생활동반자”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어 생활동반자 본인을 말한다.
4. “생활동반자관계 상대방”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어 생활동반자 상대방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제3호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를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어 생활동반자 본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계약 등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본인과 상대방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 정의되는 개념인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의미가 “생활동반자 본인”보다 넓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 제2조제2호에서 생활동반자를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에 각각 별도로 생활동반자관계의 본인과 상대방에 관한 개념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가족·가정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에 있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가정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에 있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동반자 제도 시행 이후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차별적 대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국민이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사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규정들 사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법 규정 성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없음.

한편, 제정안 제3조와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가정 생활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로 「건강가정기본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¹⁴⁾와 안 제3조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생활동반자관계 사무의 관장 및 권한의 위임(안 제5조·제6조)

제정안 제5조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를 대법원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제정안 제6조는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사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법원장이 동 사무의 처리를 가정법원장에 위임하도록 하며, 가정법원지원장이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생활동반자관계 관련 사무의 관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② 대법원장은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은 구청장,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정안 제6조를 통해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생활동반자관계 등록 및 증명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등록 사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생활동반자관계 등록 업무를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처리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읍·면의 장¹⁵⁾이 아닌 가정법원장과 가정법원지원장 등의 법원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4)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무효사유 (안 제8조·제14조)

제정안 제8조는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 제14조는 당사자 간에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등은 생활동반자관계가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①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②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제14조(생활동반자관계의 무효) 생활동반자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이 경우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한다)

제정안 제8조는 중복된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를 무효로 정함으로, 중복된 생활동반자관계 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8조제2항은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다고 규정하면서, 안 제14조제3호는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무효가 되는 생활동반자관계는 이후 중복 체결한 다른 생활동반자관계 하나인지 아니면 기존 생활동반자관계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 둘 다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존 생활동반자관계는 유효하게 유지하고, 이 후에 체결된 생활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5) 생활동반자 간의 의무, 가사대리권 및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안 제16조~18조)

제정안 제16조는 생활동반자 간의 의무를, 제17조에서는 일상 생활에 있어 가사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재산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6조(생활동반자 간의 의무) 생활동반자는 공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동반자 간의 가사대리권) ① 생활동반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제1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생활동반자관계 신고 시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생활동반자관계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생활동반자 간의 재산관계는 제19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어 부부와 유사한 지위를 유지하며 상호 권리와 의무 관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관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현행 「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29조¹⁶⁾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민법」상 부부에 준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보장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사유(안 제24조·제25조)

제정안 제24조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등에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다고 규정하고, 제정안 제25조는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는 당사자가 신고하거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성립한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4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사유) 생활동반자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소된다. 1.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는 경우 2.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3.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4.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
제25조(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① 제2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제24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성립 또는 발생한 즉시 효력이 생긴다.

제정안 제24조에 규정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라는 용어는 현행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인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는 계약의 해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임.

제정안 제25조제2항은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이 성립한 즉시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즉시 해소하는 사유 중 생활동반자관계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는 경우(제24조제1호), 당사자의 사망(제24조제3호),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제24조제5호)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사이에 관계 해소에 관한 이견이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제정안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이 발생 또는 성립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제정안 제2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고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되는 사유 중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제24조제2호),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제24조제4호)는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관계의 유지 또는 해소에 관한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부부관계와 달리 관계 해소의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와 자(子)의 양육책임(안 제27조)

제정안 제26조는 생활동반자 해소의 신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27조는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함께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6조(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의 신고) ① 제24조제1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서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3호 또는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사건의 신고로 갈음한다. ④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생활동반자관계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와 자의 양육책임) ①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함께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나이와 양육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상대자·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다른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정안 제27조는 동반자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생활동반자관계에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27조제3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나이와 양육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제정안 제26조제2항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 해소를 위한

신고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서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의 개입 및 결정은 자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효력과 연계 시킨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안 제31조 등)

제정안 제31조는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일, 제32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34조는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제35조는 관련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1조(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생활동반자관계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생활동반자관계의 형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④ 등록부와 제3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부등과 전산정보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 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 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로 발급한다.

1. 당사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상대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현재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일부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일부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34조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

하여야 한다.

- ③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⑥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동반자를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⑧ 시·읍·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장(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에서 규정한 사항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생활동반자관계등록의 작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¹⁷⁾.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⑪ (생략)

다만, 생활동반자관계는 기존의 혈연 및 혼인 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형태의 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과 같이 등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생활동반자 관계도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의 하나로 보아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보완하여 그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26항은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6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¹⁸⁾,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건강 보험, 세금, 장례, 돌봄휴가, 가족요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대리수령, 산업재해 보상, 노인복지주택 입소, 주택임대차계약의 승계 등의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법률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다른 법률은 개정하는 것은 특정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따라 법률들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나 인용문구 정리 등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제정안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26개의 법률은 제정안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인용문구 정리 등에 그치지 않고 각 법률의 실질적인 적용대상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생활동반자관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생활동반자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의 특징을 고려한 실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이 아닌 각 법률의 소관위원회 심

18)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앞 부분 제정안의 체계 중 (표) 제정안 부칙 제2조(다음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개정되는 법률 조항 참고

사를 거쳐 개별 법률에서 본칙을 개정하는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
